불법자동차 단속대상

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속칭'대포차')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는 소유자(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단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대포차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16.2월부터 해당 등록관청에서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2.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 범칙금 부과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3.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계속 운행 중이거나 등록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

4. 불법 튜닝(Tuning) 자동차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를 튜닝한 경우
·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튜닝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 HID 전조등 불법튜닝, 경광등 임의설치 등

▶ "자동차의 튜닝" 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고장방치·고의훼손
· LED 등화장치부착, 소음기, 경음기 등 임의 개조부착자동차
· 최저지상고 위반, 돌출스포일러, 돌출에어댐부착자동차 등

6.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관련 문의 및 신고기관 연락처》

· 인천광역시 군·구 교통관련 부서
·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인천(831-0196), 서인천(579-7811), 부천(674-5000)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